

사업방법서 별지

(신단체상해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 신단체상해보험

2. 보험 목적에 관한 사항

피보험자가 우연하고 급격하게 입은 신체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3.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첫날의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의 오후 4시에 끝난다. 1년 이상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 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영수할 수 있다.

5. 보험료 차등 적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6. 보험료 할인기준에 관한 사항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7. 기타사항

없음